

■ 2021학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학과 중요사항 ■

작성일: 2021.03.22

1. 교원자격증 취득 관련 교과목 이수학점

- ✓ 전공학점: 기본이수과목 21학점(7학점) 이상 포함
교과교육영역 8학점(3과목) 이상 포함
총 평점 75점 이상

기본이수과목	교과교육영역
유아교육론, 유아교육과정, 영유아발달과교육, 유아언어교육, 유아사회교육, 유아과학교육, 유아수학교육, 유아미술교육, 유아음악교육, 유아교사론, 유아동작교육, 유아놀이지도, 유아교육기관운영관리, 아동권리와 복지, 유아건강교육, 유아관찰및실습, 부모교육, 유아안전교육	①교과교육론 ②교과교재연구 및 지도법 ③교과 논리 및 논술 ④교과별 교수법 ⑤교과별 교육과정 ⑥교과별 평가방법론

- ✓ 교직학점: 교직이론 12학점 이상
교직소양 6학점 이상
교육실습 4학점 이상
총 평점 80점 이상

교직이론	교직소양	교육실습
• 12학점 이상(6과목 이상) ①교육학개론 ②교육철학 및 교육사 ③교육과정 ④교육평가 ⑤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⑥교육심리 ⑦교육사회 ⑧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⑨생활지도 및 상담 ⑩기타 교직이론에 관한 과목	• 6학점 이상 ①특수교육학개론(2학점 이상) *영재교육 영역(단원) 포함 ②교직실무(2학점 이상) ③학교폭력 예방 및 학생의 이해(2학점 이상)	• 4학점 이상 ①학교현장실습(2학점 이상) ②교육봉사활동(2학점 이내 포함) ※ 18학년도 입학자 이후 : 교육봉사 활동 2학점 이상 포함 가능

2. 교육실습

- ① 학교현장실습(교육실습)
 - 1학점당 80시간 이상을 기준으로 하며, 2학점을 이수해야 한다.
 - ※ 2학점, 총 160시간이상(4주, 1일 8시간의 실습)
- ② 교육봉사
 - 1학점당 30시간 이상을 기준으로 하며, 2학점을 이수해야 한다.
 - ※2학점, 총 60시간이상

3. 기타 합격 기준요건

- ①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
 - 2년을 초과하는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: 적격판정 2회이상
- ②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
 - 실습기준: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2회 이상의 실습을 받아야한다.
- ③ 성인지교육(★신설★)
 - 3년 이하의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: 2회이상
 - 연 1회 이상 이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
 - 성인지교육에는 다음 4가지의 내용이 반영되어야 함
 - ㉠ 디지털 성범죄 포함 성희롱·성폭력예방교육
 - ㉡ 가정·학교(대학 포함)·사회 속 성인지 감수성 및 양성평등 의식함양교육
 - ㉢ 학교현장에서의 성인지 감수성 및 양성평등 의식 향상을 위한 학생 지도 방법 및 교육 내용
 - ㉣ 성인지적 관점을 바탕으로 한 수업 및 생활지도 고려사항, 학생 및 보호자 상담 방법
 - ※ 4차시(총 4시간)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1회 이수로 인정

4. 교원자격 취득 결격사유(★신설★)

- ✓ 2021년6월23일 이후 자격검정 대상자를 기준으로 함
(무시험검정 신청일 기준이 아닌 자격 검정일 기준으로 적용)

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(유아교육법 제22조의 2 동일)

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2(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21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.

1. 마약·대마·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
2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- 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
3. 성인에 대한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
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
- ✓ 대학은 검정 대상자에게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받고, 다음 사항을 참고해 학칙 등에 결격사유 확인 내용을 반영한다.
- ㉠ (성범죄이력 관련) '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또는 대학소재지역 경찰서에 공문 발송을 통한 확인'할 수 있으며, 세부 절차는 대학별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.(미발급자의 발급 신청의 경우는 신청자가 경찰서, 범죄이력회보서 발급시스템 등에서 발급한 증명서 직접 첨부)
- ㉡ (중독여부 관련) '무시험검정 신청자가 의사 진단서를 첨부하여 제출'(일괄 검진 가능)하며, 대학은 확인 후 명단을 원본과 함께 보관하도록 한다.